

[변경 대비 표]

■ 변경 집합투자기구 및 변경 서류

펀드명	BNK BNK 미래전략기술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식)
변경서류	집합투자규약
변경사유	세제 개편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
효력발생일	2026년 02월 24일

■ 변경대비표

항목	변경사유	변경 전	변경 후
제18조(한도 및 제한의 예외)	오기 정정	① 다음 --(생략)--한다. 1.~2. (생략) 3.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(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) 4.~5. (생략) ②~③ (생략)	① 다음 --(현행과 동일)-- 한다. 1.~2. (현행과 동일) 3.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(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) 4.~5. (현행과 동일) ②~③ (현행과 동일)
제31조(투자신탁분배금)	세제 개편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	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지수에 대한 추적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익금의 범위내에서 분배를 유보하며,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. 1.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.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3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(단서조항 신설) 4. <신설>	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지수에 대한 추적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익금의 범위내에서 분배를 유보하며,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. 1.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.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3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[이자수입 및 배당이익(제4호의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은 제외한다)은 제외한다] 4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중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기 위해 배당이익을 구성종목의 비중

		② <생략>	따라 재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 서 발생한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 ② <기존과 동일>
부칙	-	<신설>	< 부 칙 2 > (시행일) 이 투자신탁은 2026년 02월 24 일부터 시행한다.

<끝>.